# 약정금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2012나89360(본소), 2012나89377(반소)]

###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정규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3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9. 선고 2010가합127902(본소), 2011가합43940(반소) 판결 【변론종결】2013. 10. 11.

### 【주문】

### ]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635,936,671원 및 그 중 별지 6. 본소 인용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1. 3. 1.부터 2014. 1. 24.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란에 기재된 금원에 대하여는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와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6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959,454,928원 및 그 중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에 따른 접속통화료의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3,678,885,782원 및 그 중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 내지 4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5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8,043,380,564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11, 12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13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일부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959,454,928원 및 그 중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 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 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 '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에 따른 접속통화료의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 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 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3,678,885,782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 내지 4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5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8,043,380,564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1, 12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13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 고는 제1심에서 일부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위 와 같이 확장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959,454,928원 및 그 중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 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 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 '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에 따른 접속통화료의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 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 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3,678,885,782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 내지 4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5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8,043,380,564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1, 12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13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 고는 제1심에서 일부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위 와 같이 확장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959,454,928원 및 그 중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에 따른 접속통화료의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

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 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3,678,885,782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 내지 4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5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8,043,380,564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1, 12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13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 고는 제1심에서 일부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위 와 같이 확장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959,454,928원 및 그 중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 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 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 '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에 따른 접속통화료의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 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 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3.678.885.782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 내지 4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5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8,043,380,564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1, 12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13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일부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959,454,928원 및 그 중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 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 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 '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에 따른 접속통화료의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 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 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3,678,885,782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 내지 4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5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8,043,380,564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1, 12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13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 고는 제1심에서 일부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위 와 같이 확장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959,454,928원 및 그 중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 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 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 '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에 따른 접속통화료의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 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 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3.678.885.782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 내지 4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5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8,043,380,564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1, 12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13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 고는 제1심에서 일부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위 와 같이 확장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959,454,928원 및 그 중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에 따른 접속통화료의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

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3,678,885,782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 내지 4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5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8,043,380,564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1, 12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13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 고는 제1심에서 일부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위 와 같이 확장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959,454,928원 및 그 중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 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 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 '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에 따른 접속통화료의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 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 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3,678,885,782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 내지 4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5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8,043,380,564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1, 12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13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일부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959,454,928원 및 그 중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 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 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 '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에 따른 접속통화료의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 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 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3,678,885,782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 내지 4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5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8,043,380,564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1, 12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13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 고는 제1심에서 일부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위 와 같이 확장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959,454,928원 및 그 중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 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 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 '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에 따른 접속통화료의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 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 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3,678,885,782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 내지 4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5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8,043,380,564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1, 12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13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 고는 제1심에서 일부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위 와 같이 확장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959,454,928원 및 그 중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에 따른 접속통화료의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3,678,885,782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 내지 4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5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8,043,380,564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1, 12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13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 고는 제1심에서 일부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위 와 같이 확장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959,454,928원 및 그 중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 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 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 '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에 따른 접속통화료의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 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 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3,678,885,782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 내지 4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5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8,043,380,564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1, 12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13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일부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 (1)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959,454,928원 및 그 중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의 'LM 3G 원금'란에 기 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표의 'LM 3G 연체 이율'란에 기재된 각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VM 3G 원금 '란에 기재된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연체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약정에 따른 접속통화료의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 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 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청구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33,678,885,782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 내지 4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5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8.043.380.564원 및 그 중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의 순번 11, 12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1. 5.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위 표의 순번 13 내지 39항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13. 1. 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 고는 제1심에서 일부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를 위 와 같이 확장하였다).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선전화망의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LM 3G호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1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1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1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 1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1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 1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1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1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1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 [상호접속기준]

제2조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기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 업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상대방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예컨대, 피고의 유선전화가입자가 원고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각자의 통신망을 상호연결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 (2) "상호접속"이란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피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통화를 하는 경우, 그 통화호의 형태에 따라 LM(Land to Mobile)호, VM(VoIP to Mobile)호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다시 [도표 1] 기재와 같이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분할 수 있다.

# [도표 1] 통화호의 분류

- 통화호통화형태LM 3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3G호피고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3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LM 2G호피고의 유선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VM 2G호피고 의 인터넷전화망에서 원고의 2G 이동전화망으로의 통화
  - 나. 상호접속기준과 정보제공기준
-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상호접속기준]과 같고,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2008.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7호, 이하 '정보제공기준'이라 한다)은 아래 [정보제공기준]과 같다.

[상호접속기준]

제2조